

특 정 범 죄 자 에 대 한 보 호 관 찰 및
전 자 장 치 부 착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1. 개정이유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 대상을 확대하고, 「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법원이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23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 2020. 8.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의 의뢰, 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 등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명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함.

나. 용어의 정비(안 제12조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용어 중 “가해제”가 “임시해제”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다. 서식 마련(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 1) 법 제31조의2제2항 및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 의뢰서(별지 제44호의2서식)
- 2) 법 제31조의3제2항 및 영 제23조의4에 따른 신고서(별지 제44호의3서식)
- 3) 법 제31조의4제1항 및 영 제23조의6에 따른 보석조건 이행상황 통지서(별지 제44호의4서식)
- 4) 법 제31조의4제2항 및 영 제23조의7에 따른 보석조건 위반 통지서(별지 제44호의5서식)

라. 서식 정비(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52호서식까지)

법률 제명 변경 및 용어의 정비에 따라 기존 서식 내용에 이를 반영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가해제 신청서 등)”을 “(임시해제 신청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가해제”를 각각 “임시해제”로 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가해제의 심사·결정기준)”을 “(임시해제의 심사·결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가해제”를 “임시해제”로 한다.

제13조 중 “가해제”를 각각 “임시해제”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영 제19조제2항”을 “영 제19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조사의 의뢰) 법 제31조의2제2항 및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의 의뢰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3(보석 피고인 신고서) 법 제31조의3제2항 및 영 제23조의4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4(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 법 제31조의4제1항 및 영 제23조의6에 따른 보석조건 이행 상황의 통지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5(보석조건 위반 통지) 법 제31조의4제2항 및 영 제23조의7에 따른 보석조건 위반 통지는 별지 제44호의5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4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5호서식부터 별지 제5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항제1호 및 제23조제6항 제1호·제2호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5조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 **검찰청**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 호

이
이
이

수 신 ○ ○ 보호관찰소장

발 신 ○ ○ 지방검찰청

검 사 ○ ○ ○ (인)

제 목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요청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
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2호 []제3항제2호에 따라 아래 []피
의자 []출소예정자 []출소임박자 []출소자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사 건 번 호	
	주 소	
	연 락 처	
범 죄 사 실 의 요 지		
통 보 기 한	년 월 일	
붙 임		

210mm×297mm[백상지 80g/m²]

○ ○ 검 찰 청

사건번호 20 형제 호

년 월 일

수 신 ○ ○ 지방법원장

발 신 ○ ○ 지방검찰청

검 사 ○ ○ ○ (인)

제 목 부착명령 청구서

아래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합니다.

Ⅰ. 피부착명령청구자 관련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나 이)	(세)
직 업		연 락 처	
주 거 지			
등 록 기 준 지			
죄 명			
적 용 법 조 문			
구 속 여 부	20 . . . 구속 (20 . . . 체포)		
변 호 인			

Ⅱ.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Ⅲ. 첨부

○ ○ 검 찰 청

사건번호 20 형제 호

년 월 일

수 신 ○ ○ 지방법원장

발 신 ○ ○ 지방검찰청

검 사 ○ ○ ○ (인)

제 목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합니다.

I. 피부착명령청구자 관련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나 이)	(세)
직 업		연 락 처	
주 거 지			
등 록 기 준 지			
죄 명			
적 용 법 조 문			
구 속 여 부	20 . . . 구속 (20 . . . 체포)		
변 호 인			

II.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

III. 첨부

--

○○교도소(치료감호소)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년 월 일

수 신 ○○보호관찰소장

발 신 ○○ 교도소장(치료감호소장)

직인

제 목 석방예정통보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제8조제5항, []제20조제2항,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명령자 []피부착결정자 []출소자 등이 다음과 같이 석방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수 용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석 방 후 거 주 예 정 지			
판 결 (결 정)	날 짜	판결(결정)법원 사 건 번 호	
	죄 명	형 명 · 형 기	
부 착 기 간			
석 방 예 정 일 시		석 방 사 유	
담 당 자 및 연 락 처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 ○ 검 찰 청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집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보호관찰소장 발 신 ○○ 지방검찰청
검 사 (인)

제 목 :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아래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확정 []고지되었으므로,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집행을 지휘함.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 (출소자등)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세)
	주 거 지	
죄 명		
판 결 (결 정)	법 원 및 일 자	○○ 지방법원 . . .
	확 정 일 (고 지 일)	
	부 착 명 령 기 간	
	준 수 사 항	. . .
비 고	부 착 명 령	
첨 부 : 판결(결정)문 등본 1통		

210mm×297mm[백상지 80g/㎡]

○ ○ 교 도 소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년 월 일

수 신 ○○ 보호관찰소장

발 신 ○ ○ 교도소장

직인

제 목 : 구금(구금해제결정) 통보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아래 피부착자가 다음과 같이 []구금, []구금해제 결정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석 방 후 거 주 예 정 지			
구 금 일 시 (구금해제 예정일시)		구 금 사 유 (구금해제 사유)	
담 당 자 및 연 락 처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 ○ 교 도 소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년 월 일

수 신 ○○ 보호관찰소장(○○ 교도소장)

발 신 ○○ 교도소장(치료감호소장)

직인

제 목 : 부착명령 집행정지자(피부착결정자) 이송 통보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 집행정지자, []피부착결정자를 아래와 같이 이송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집행 정지자 (피부착 결정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송일자				
이송사유				
판결	날짜		판결법원 사건번호	
	죄명		형명 형기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

전자장치 일시분리 대장

○○보호관찰소

연번	피부착자		일시분리 사 유	분리·재부착 일시		처리자	확인자
	성 명			분리일시		(확인)	(확인)
	사건번호			재부착일시		(확인)	(확인)
	성 명			분리일시		(확인)	(확인)
	사건번호			재부착일시		(확인)	(확인)
	성 명			분리일시		(확인)	(확인)
	사건번호			재부착일시		(확인)	(확인)
	성 명			분리일시		(확인)	(확인)
	사건번호			재부착일시		(확인)	(확인)
	성 명			분리일시		(확인)	(확인)
	사건번호			재부착일시		(확인)	(확인)
	성 명			분리일시		(확인)	(확인)
	사건번호			재부착일시		(확인)	(확인)
	성 명			분리일시		(확인)	(확인)
	사건번호			재부착일시		(확인)	(확인)
	성 명			분리일시		(확인)	(확인)
	사건번호			재부착일시		(확인)	(확인)
	성 명			분리일시		(확인)	(확인)
	사건번호			재부착일시		(확인)	(확인)

210mm×297mm[백상지 80g/㎡]

신 고 서

※ 신고한 내용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으며,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도·감독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5쪽 중 1쪽)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의 경우 : 국적·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 ※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재외국민의 경우 :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 국적·여권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		
판결(결정)기관 :	판결(결정)일자 :		
판결(결정)내용 (해당되는 모든 내용에 ○표시)	사형, 무기(감형 년 월), 징역형(징역·금고 년 월), 집행유예(징역·금고 년 월)		
	가석방, 가종료, 가출소, 보호관찰, 부착명령, 치료명령, 신상공개		
	부착명령 기간(년 월)	준수사항	
	보호관찰 기간(년 월)	①아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년 월)	
	약물치료 기간(년 월)	②특정지역·장소에서의 출입금지(출입금지 지역 :)	
	신상공개 기간(년 월)	③주거지역의 제한 ④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접근금지 대상 :) ⑤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시간) ⑥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주소·연락처(외국인의 경우 국내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

주민등록주소 :		실제 거주지(주민등록주소와 다를 경우 기재) :	
☎(집전화번호) :		☎(집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기타 연락처:	
(문자서비스 []동의, []동의안함)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관련 유의사항

전화번호 변경 시 즉시 보호관찰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수신된 각종 정보는 본인 책임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휴대전화의 타인양도, 분실 등 본인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발신된 문자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안내 받음.

대상자 : (서명 또는 인)

귀하의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실이 공 개된 범위	[]가족, []직장,[]학교, []친구,[]이웃, []친인척
우편물수령지	[]주민등록주소, []실제 거주지, []판결정문주소, []직장주소, []기타주소 (기타주소 :)

2. 직업(무직이면 전직과 우편물 수령지 기재 후 3번으로 기입시오) 전직(前職):

직업:	직장주소:
직장명:	☎전화번호:

3. 죄명

사범		죄명	
----	--	----	--

4. 직업 상세사항

부서:	근무형태:	급여액:	근무시작일:
직위:	[]주간, []야간, []2교대, []3교대, []기타()	만원	년 월 일
근무시간대 :	급여형태 :		
: ~ : (시간/일)	[]연봉 []월급 []주급 []일급 []시급		

5. 학력 상세사항

출신학교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최종학력:	시(군)	학교	과	학년 반(담임 :)
[]재학, []졸업, []중퇴, []휴학 (년 월)				
중퇴·미진학 사유:	최종 재학 1년 동안 결석일수 : 총 일			

6. 종교·취미

종교(교회, 사찰 등 이름): ()	취미·특기 :
----------------------	---------

7. 자격증(해당사항 없으면 표시 후 9번으로 가십시오) □없음

자격 명칭	1. 2.	취득 시기	1. 년 월 2. 년 월
운전 면허 상태	[]있음, []취소, []정지, []무면허	면허 종별	[]1종, []2종, []특수, []원동기, []해당없음

8. 가족 및 혼인 관련

가족	[]조부, []조모, []친부, []계부, []친모, []계모, []배우자, []그 밖의 동거인()
관련	형제관계: ()남 ()녀 중 ()째
혼인	[]미혼, []기혼, []동거, []별거, []이혼, []사별, []기타()
관련	

9. 경제상태

가족 중 생계책임자:	국가지원여부:		
	[]수급권자, [] 그 밖의 복지수당, []해당없음		
거주 형태	[]자택, []전세, []월세, []무상, []그 밖의 형태()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면적: m ² , 방 ()개		
채무:	원([]은행, []카드, []사채, []그 밖의 형태 :)	저축액 : 원	
차량(원동기 포함):	차종:	차량번호:	보험가입:
[]있음, []없음	색깔:		[]책임, []종합, []무보험

10. 음주 및 흡연 관련(해당사항 없으면 표시 후 12번으로 가십시오) []없음

시작 나이 :	음주 정도 :	1회 음주량 : 소주 병, 맥주 병
음주 만 세	월 회	1일 흡연량 : 개비
흡연 만 세		
만취경험(기억이 안 날 정도): 월 회		음주관련 처벌경험 : 회

11. 약물 경험 관련(해당사항 없으면 표시 후 13번으로 가십시오) []없음

사용경험약물:	시작 나이 :	사용 횟수 :
[]본드, []신나, []부탄, []러미날,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염산날부핀, []S	만 세	총 회
정, []코카인, []아티반, []그 밖의 약물:		

12. 가출 관련(해당사항 없으면 표시 후 14번으로 가십시오) []없음

최초 가출 나이 :	가출동기 :	가출횟수 : 회
만 세		

13. 신체특징

키: cm	문신여부:	 <앞모습>	 <뒷모습>
몸무게: kg	[]없다		
질병 및 장애 :	[]있다(옆에 자세히 적을 것)		
[]없다			
[]있다(자세히 적을 것):			
그 밖의 외형적 특징 등 :			

14. 범행관련 상세사항

공범 수 : 명	피해자와의 관계 :
동기 :	피해배상 :
	[]배상함, []배상 않음, []해당 없음
범죄경력(입건 횟수) :	보호관찰경력(본건 제외) : 총 회
총 회(동일종류 범죄 회)	부착명령경력(본건 제외) : 총 회

15. 가족(동거인 포함)

※ 친밀도란은 신뢰 및 지원의 정도에 따라 해당란에 표시(√)(아주 좋음 5, 좋음 4, 보통 3, 나쁨 2, 아주 나쁨 1)

관계	이름	나이	학력	직업	월수입 (만원)	연락처	동거 여부	친밀도					건강 상태	비고
								5	4	3	2	1		
							[] 동거 [] 별거							
							[] 동거 [] 별거							
							[] 동거 [] 별거							
							[] 동거 [] 별거							
부모 사망 여부 :				부모 이혼 여부 :		이혼						접촉	월 회	
[] 사망(부, 모), [] 생존				[] 이혼 [] 이혼 안함		사유						빈도		

16. 공범

※ 친밀도란은 친근감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해당란에 표시(√)(아주 친함 5, 친함 4, 보통 3, 조금 아는 정도 2, 별로 친하지 않음 1)

관계	이름	나이	성별	학력	직업	연락처	주소	접촉 빈도 (월 회)	친밀도					비고
									5	4	3	2	1	

17. 주변인물(친구, 선후배, 그 밖의 사람)

※ 친밀도란은 친근감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해당란에 표시(√)(아주 친함 5, 친함 4, 보통 3, 조금 아는 정도 2, 별로 친하지 않음 1)

관계	이름	나 이	성별	학력	직업	연락처	주소	접촉 빈도 (월 회)	친밀도					비고
									5	4	3	2	1	

18. 주요 경력(상벌, 취업, 군경력 등을 적으십시오)

기 간	내용
. .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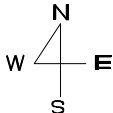
19. 귀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귀하가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해당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교란은 보호관찰관이 작성하는 곳이므로 적지 마십시오.

구분	매우 문제 많음	약간 문제 있음	보통	대체로 문제 없음	전혀 문제 없음	비 고 (보호관찰관 작성란)
가족 관계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친구 관계						
재정 상태						
건강 상태						
음주						
약물						

20. 약도

※ 집에서 가깝고 누구나 알 수 있는 큰 건물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고려하여 그리십시오.

	
	1. ()층 건물의 ()에 거주 2. 가옥형태(양옥, 한옥, 아파트, 그 밖의 형태:) 3. 집 문패명 : 4. 대문 색깔 : 5. 대문 모양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또는 제2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 보호관찰(지)소장 귀하

[]주거이전 []국내여행 []출국 허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 경우: 국적·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	
	※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적·여권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	
주 거 지		

2. 주거이전(국내여행, 출국) 허가 신청 사항

주거이전이유 (국내여행목적, 출 국 목 적)	
주거이전예정지 (국내여행예정지, 출 국 예 정 지)	(전 화 번 호:)
주거이전 일자 (국내여행 기간, 출국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경 유 예 정 지	(전 화 번 호:)
동 반 가 족 (동행예정자)	
교 통 편	
첨 부	소 명 자 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거이전, []7일 이상의 국내여행, []출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보호관찰소장 귀하

[]주거이전 []국내여행 []출국 허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 경우: 국적·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	
	※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적·여권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	
주 거 지		

2. 주거이전(국내여행, 출국) 허가 사항

주거이전이유 (국내여행목적, 출국목적)	
주거이전에정지 (국내여행에정지, 출국에정지)	(전화번호:)
주거이전 일자 (국내여행·출국 허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경유예정지	(전화번호:)
동반가족 (동행예정자)	
교통편	

3. 이행사항

가. 주거이전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새로운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출국 후 입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 주거이전(국내 여행, 출국)과 관련하여, 허가된 내용과 이행사항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거이전, []7일 이상의 국내여행, []출국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인)

○ ○ ○ 귀하

○ ○ 보호관찰소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 호

년 월 일

수 신 법무부장관(참조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발 신 ○ ○ 보호관찰소장 직인

제 목 : 출입국사실 통보 요청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아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출입국사실 통보를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출국예정 일 자		입국예정 일 자	
요청사유			

210mm×297mm[백상지 80g/m²]

○ ○ 보호관찰소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 지방검찰청 검사장

발 신 ○ ○ 보호관찰소장

직인

제 목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삭제 신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부착기간의 연장, []준수사항 추가, []준수사항 변경, []준수사항 삭제를 신청 합니다.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지	
	사 건 번 호	
원래 부착기간 (원래 준수사항)		
신청의 취지		
부착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 · 변경 · 삭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기재와 같음	
참고자료		

○ ○ 검찰청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사건번호 형제 호 년 월 일

수 신 ○ ○ 지방법원장

발 신 ○ ○ 지방검찰청

검 사 ○ ○ ○ (인)

제 목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삭제 청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기간의 연장, []준수사항 추가, []준수사항 변경, []준수사항 삭제를 청구합니다.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사건번호	
원래 부착기간 (원래 준수사항)		
청구의 취지		
부착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변경·삭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기재와 같음	
참고자료		

특정범죄자 []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 지정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특정범죄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기 관 개 요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	
치 료 방 법	[] 「의료법」 상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 []상담 등 교정프로그램의 실시		
기관의 시설 및 설 비			
치료 또는 교정 프로그램 담당자	총 명(정신과 전문의 명, 정신보건전문요원 명, 특정 범죄자 치료 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 명)		
치료 또는 상담 치료 가능 인원	연간 명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피부착자의 치료 및 상담치료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단체로 지정하여 줄 것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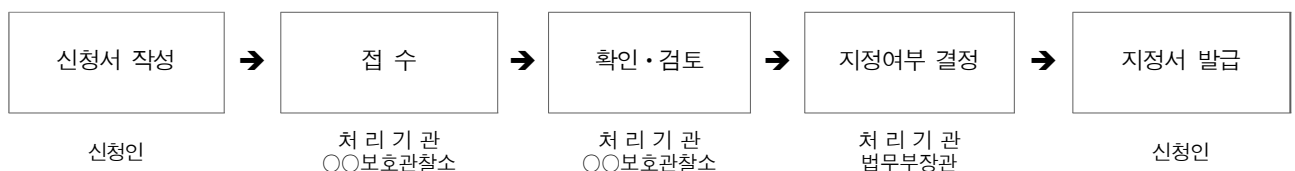
법무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인 제출서류	1.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특정 범죄자를 치료하고 특정 범죄자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한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치료 또는 교정프로그램을 담당할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서 3년 이상의 특정 범죄자 치료에 관한 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나. 특정 범죄자 치료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특정 범죄자 치료에 관한 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3. 치료 또는 상담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서(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시설 또는 단체의 회칙, 규약 또는 법인의 정관 5. 시설 또는 단체의 운영계획서 및 수지에산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치료 또는 상담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한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이 신청인의 소유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처 리 절 차



○ ○ 보호관찰소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년 월 일

수 신 법무부장관

발 신 ○ ○ 보호관찰소장 직인

제 목 : 특정범죄자 []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아래 신청인의 특정범죄자 []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기관명 (법인명)		신청인의 성명 (대표자)	
대상 특정 범죄		치료방법	
제시 의견	[]지정 적정, []지정 부적정		

항목별 검토 내용

- 영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해당기관 여부: []해당함 []해당 없음
- 특정 범죄자 치료 실적: []우수 []보통 []미흡
- 평가 사유:
- 특정 범죄자 교정프로그램 개발·실시 경험: []우수 []보통 []미흡
- 평가 사유:
- 치료 또는 교정프로그램 담당자의 자격: []우수 []보통 []미흡
- 평가 사유:
- 기타 의견: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특정범죄자 []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 지정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기관명(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 ☐ 기관장(대표자): (생년월일 :)
- ☐ 대상 특정 범죄 :
- ☐ 치료 또는 교정프로그램 담당자 :
- ☐ 연간 치료 또는 상담치료 가능 인원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법무부장관

직인

(뒤쪽)

변경사항		
날짜	내용	기록자 (서명 또는 인)

특정범죄자 []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기관 명칭				
기 관 소재지			변경 연월일	
변경 사항	구 분	기관장 성명 (생년월일)	명 칭	소재지
	변경 전			
	변경 후			
	구 분	대상 특정 범죄	치료 · 교정프로그램 담당자	연간 치료 · 상담치료 가능 인원
	변경 전			
	변경 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5항에 따라 []기관장, []명칭, []소재지, []대상 특정 범죄, []치료 · 교정프로그램 담당자, []연간 치료 · 상담치료 가능 인원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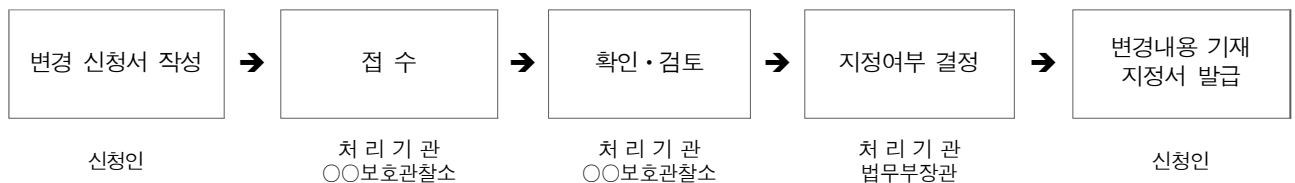
법무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인 제출서류	1. 기관의 장, 명칭, 연간 치료·상담치료 가능 인원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관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치료 또는 상담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서(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치료 또는 교정프로그램의 대상 특정 범죄가 변경된 경우: 특정 범죄자를 치료하고 특정 범죄자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한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치료 또는 교정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람이 변경된 경우: 치료 또는 교정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람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5.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기관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치료 또는 상담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한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이 신청인의 소유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처 리 절 차



○ ○ 보호관찰소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년 월 일

수신 법무부장관

발신 ○ ○ 보호관찰소장 직인

제 목 특정범죄자 []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의견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아래 신청인의 특정범죄자 []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기관명 (법인명)		신청인의 성명 (대표자)	
변경신청 내용			
제시 의견	[]변경신청 적정, []변경신청 부적정		

항목별 검토 내용

- 기관의 장 변경의 적정성: []적정 []부적정 []해당 없음
- 평가 사유:
- 기관의 명칭 변경의 적정성: []적정 []부적정 []해당 없음
- 평가 사유:
- 기관의 소재지 변경의 적정성: []적정 []부적정 []해당 없음
- 평가 사유:
- 대상 특정 범죄 변경의 적정성: []적정 []부적정 []해당 없음
- 특정 범죄자 치료 실적: []우수 []보통 []미흡 []해당 없음
- 특정범죄자 교정프로그램 개발·실시 경험: [] 우수 [] 보통 [] 미흡 [] 해당 없음
- 평가 사유:
- 치료·교정프로그램 담당자 변경의 적정성: []적정 []부적정 []해당 없음
- 치료·교정프로그램 담당자의 자격: []우수 []보통 []미흡 []해당 없음
- 평가 사유:
- 연간 치료·상담치료 가능 인원 변경의 적정성: []적정 []부적정 []해당 없음
- 기타 의견:

210mm×297mm[백상지 80g/㎡]

○ ○ 보호관찰소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 교도소장(치료감호소장)

발 신 ○ ○ 보호관찰소장

직인

제 목 수용 중 생활실태에 대한 자료 또는 면접 요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제21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13조의5에 따라 아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 []보호관찰대상자의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 중의 생활실태에 대한 자료 또는 면접을 요청합니다.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 (보호관찰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지			
	죄 명		형명·형기 (이수명령 포함)	
필요한 자료의 범위				
면접일시 및 면접예정자				

○ ○ 교도소(치료감호소)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 보호관찰소장

발 신 ○ ○ 교도소장(치료감호소장)

직인

제 목 수용 중 생활실태에 대한 자료 통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제21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13조의5에 따라 아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 []보호관찰대상자의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 중의 생활실태를 통지합니다.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 (보호관찰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지			
	죄 명		형명·형기 (이수명령 포함)	
수용 중 생활실태	교 육			
	교화프로그램			
	상·벌 및 기능자격 등			
	기타			
첨 부	그 밖에 필요한 참고서류			

수신자료 사용대장

○○보호관찰소

연 번	피부착자		의뢰사유	의뢰사항		처리자	확인자
	성 명			의뢰일자		(확인)	(확인)
	사건번호			의뢰기관			
	성 명			의뢰일자		(확인)	(확인)
	사건번호			의뢰기관			
	성 명			의뢰일자		(확인)	(확인)
	사건번호			의뢰기관			
	성 명			의뢰일자		(확인)	(확인)
	사건번호			의뢰기관			
	성 명			의뢰일자		(확인)	(확인)
	사건번호			의뢰기관			
	성 명			의뢰일자		(확인)	(확인)
	사건번호			의뢰기관			
	성 명			의뢰일자		(확인)	(확인)
	사건번호			의뢰기관			
	성 명			의뢰일자		(확인)	(확인)
	사건번호			의뢰기관			
	성 명			의뢰일자		(확인)	(확인)
	사건번호			의뢰기관			
	성 명			의뢰일자		(확인)	(확인)
	사건번호			의뢰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 ○ 경찰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 호

년 월 일

발 신 ○ ○경찰서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

사법경찰관 ○○ (인)

제 목 수신자료 열람·조회 허가신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신자료[]열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세)
	직 업			
	주 거 지			
수신자료 제공기관	○ ○ 보호관찰소/위치추적 ○ ○관제센터			
요청사유				
필요한 자료의 범위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 **검찰청**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의
의
의

발 신 ○ ○지방검찰청

검 사 ○ ○ ○ (인)

제 목 수신자료 열람·조회 허가청구서

다음과 같이 수신자료 []열람, []조회 요청 허가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
되므로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세)
	직 업			
	주 거 지			
수신자료 제공기관	○ ○ 보호관찰소/위치추적 ○ ○관제센터			
요청사유				
필요한 자료의 범위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 ○ 검찰청(○ ○ 경찰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 호

년 월 일
발 신 ○ ○지방검찰청

수 신 ○ ○보호관찰소장(위치추적 ○ ○관제센터장)

검사 ○ ○ ○ (인)

○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제 목 긴급 수신자료 열람·조회 요청서

다음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으로 수신자료 []열람, []조회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세)
	직 업		
	주 거 지		
요청사유			
필요한 자료의 범위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			

○ ○ 검찰청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 호

년 월 일

발 신 ○ ○ 지방검찰청

수 신 ○ ○ 지방법원장

검사 ○ ○ ○ (인)

제 목 수신자료 열람·조회 허가 청구(사후)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세)
	직 업		
	주 거 지		
위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긴급 수신자료 []열람, []조회를 요청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수신자료 제공기관	○ ○ 보호관찰소/위치추적 ○ ○ 관제센터		
요청사유			
필요한 자료의 범위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			
집행일시·장소			
집행자의 관직·성명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 ○ 경찰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 호

년 월 일

발 신 ○ ○경찰서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

사법경찰관 ○○ (인)

제 목 수신자료 열람·조회 허가신청(사후)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세)
	직 업		
	주 거 지		
위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긴급 수신자료 []열람, []조회를 요청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자료 제공기관	○ ○ 보호관찰소/위치추적 ○ ○관제센터		
요청사유			
필요한 자료의 범위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			
집행일시·장소			
집행자의 관직·성명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 검찰청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 호

년 월 일

발 신 ○ ○ 지방검찰청

수 신 ○ ○ 지방법원장

검사 ○ ○ ○ (인)

제 목 수신자료 열람·조회 허가 청구(사후)

다음과 같이 긴급 수신자료 []열람, []조회 요청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세)
	직 업			
	주 거 지			
수신자료 제공기관		○ ○ 보호관찰소/위치추적 ○ ○ 관제센터		
요청사유				
필요한 자료의 범위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				
집행일시·장소				
집행자의 관직·성명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수신자료 열람·조회 대장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열람조회 신청관서 또는 주임검사	사법경찰관 허가신청 일자	사법경찰관 신청일자	검찰허가 청구일자 (재청구일자)	법원 허가 일자	법원청구 일자 (재청구 일자)	피부착자 성명	열람 또는 조회 일자	수신자료 제공기관	필요한 자료의 범위

210mm×297mm[백상지 80g/㎡]

긴급 수신자료 열람·조회 대장

[illegible]210mm×297mm[백상지 80g/m²]

수신자료 열람·조회 접수 대장

○○보호관찰소

신청관서 (담당자)					
피부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필요한 자료의 범위					
열람 조회	요 청 일 시	. . .	. . .	. . .	
	제 공 일 시	. . .	. . .	. . .	
긴 급 열람 조회	요 청 일 시	. . .	. . .	. . .	
	제 공 일 시	. . .	. . .	. . .	
	사후 허가서	발부일시	. . .	. . .	. . .
		기각일시	. . .	. . .	. . .
	폐기	폐기일자			
		통지관서			
		폐기 담당자			

210mm×297mm[백상지 80g/㎡]

○ ○ 검 찰 청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 보호관찰소장

발 신 ○ ○ 지방검찰청 검사장 (○ ○ 경찰서장)

직인

제 목 수신자료 폐기사실 통지

다음과 같이 긴급 수신자료 열람·조회한 수신자료를 폐기하고 아래와 같이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지			
폐기일시				
폐기사유	허가신청 기각(일시 : : . . .) 허가청구 기각(일시 : : . . .)			
폐기방법				
폐 기 담당자	성명 (인)			

○ ○ 검찰청(경찰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 보호관찰소장

발 신 ○ ○ 지방검찰청 검사장(○○ 경찰서장)

직인

제 목 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여 수사한 사건에 대한 종국처분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지			
수신자료 열람・조회일				
종국처분 일자				
종국처분 결과				
비 고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 ○ 보호관찰소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 지방검찰청 검사장(○ ○ 경찰서장)

발 신 ○ ○ 보호관찰소장

직인

제 목 피부착자 []범죄사실, []범죄의심 사실 통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피부착자의 []범죄사실, []범죄의심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지	
	직 업	
통보내용	범죄 발생일시, 장소, 범행내용 등	
참고자료		

210mm×297mm[백상지 80g/㎡]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가해제(가해제 취소)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보호관찰소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항목 기재 생략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피부착자 (보호관찰대상자) 와의 관계			
	주소(연락처)			
피부착자 (보호관찰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죄명			형명·형기	
부착명령(보호관찰) 개시일			부착명령 (보호관찰) 만료예정일	
신청의 이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에 따라 피부착자(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가해제, []가해제 취소 심사 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가해제(가해제 취소) 결정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사 건 번 호		년 제 호	신 청 인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문 (主 文)				
이 유				
[]가 해 제 일				
[]가해제 취소일				
적 용 법 조 문				

년 월 일

○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 ○ 검 찰 청

사건번호 20 형제 호 년 월 일

수 신 ○ ○ 지방법원장 발 신 ○ ○ 지방검찰청

검 사 ○ ○ ○ (인)

제 목 보호관찰명령 청구서

아래와 같이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합니다.

Ⅰ.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관련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나 이)	(세)
직 업		연 락 처	
주 거 지			
등 록 기 준 지			
죄 명			
적용법조문			
구 속 여 부	20 . . . 구속 (20 . . . 체포)		
변 호 인			

Ⅱ.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Ⅲ. 첨부

○ ○ 검 찰 청

사건번호 20 형제 호

년 월 일

수 신 ○ ○ 지방법원장

발 신 ○ ○ 지방검찰청

검 사 ○ ○ ○ (인)

제 목 공소장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서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며,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합니다.

I .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관련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나 이)	(세)
직 업		연 락 처	
주 거 지			
등 록 기 준 지			
최 명			
적 용 법 조 문			
구 속 여 부	20 . . . 구속 (20 . . . 체포)		
변 호 인			

II . 공소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

III . 첨부

--

○ ○ 검 찰 청

○집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 보호관찰소장

발 신 ○ ○ 지방검찰청

검 사 ○ ○ ○ (인)

제 목 보호관찰명령 집행지휘서

아래와 같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21조의8에 따라 판결(결정)문 등본을 첨부하여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을 지휘함.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지	
죄 명		
판 결 (결 정)	법원 및 일자	○ ○ 지방법원 . . .
	확 정 일 (고지일)	
	보호관찰 기간	
	준수사항	
비 고	보호관찰명령	
첨 부	판결(결정)문 등본 1통	

210mm×297mm[백상지 80g/㎡]

○ ○ 보호관찰소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 지방검찰청 검사장

발 신 ○ ○ 보호관찰소장

직인

제 목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삭제 신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준수사항 추가, []준수사항 변경, []준수사항 삭제를 신청합니다.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지	
	사 건 번 호	
원래 보호관찰기간 (원래 준수사항)		
신청의 취지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 · 변경 · 삭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기재와 같음	
참고자료		

○ ○ 검 찰 청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사건번호 형제 호 년 월 일

수 신 ○ ○ 지방법원장 발 신 ○ ○ 지방검찰청

검 사 ○ ○ ○ (인)

제 목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삭제 청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준수사항 추가, []준수사항 변경,[]준수사항 삭제를 청구합니다.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지	
	사건번호	
원래 보호관찰기간 (원래 준수사항)		
신청의 취지		
보호관찰기간의 연장(준수사항의 추가·변경·삭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기재와 같음	
참고자료		

○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치료감호심의위원회)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년 월 일

수 신 ○○ 보호관찰소장

발 신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

직인

제 목 :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부 착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석방 후 거주예정지	
보호관찰 기간		
부착 기간		
특별 준수사항		
석방예정 일시		
첨 부 결정서 등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전자장치 부착 결정서

피치료 감호자	등록기준지	
	주 소	
	직 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 문(主 文)		
이 유		
적 용 법 조 문		

년 월 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이
이

발신 ○ ○ 법원장

제 목 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 의뢰서

피 고 인	성 명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세)		
	주 소			
	등 록 기 준 지			
	사 건 번 호			
범 죄 사 실 의 요 지				
통 보 기 한	년 월 일			
붙 임	참 고 자 료			

- 57 -

신 고 서 (보 석 피 고 인)

※ 신고한 내용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으며,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석조건 이행 여부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의 경우 : 국적·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 ※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 국적·여권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
결정기관 :	결정일자 :

1. 주소·연락처(외국인의 경우 국내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

주민등록주소 :	실제 거주지(주민등록주소와 다를 경우 기재) :	
☎(집전화번호) :	☎(집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기타 연락처:
(문자서비스 []동의, []동의안함)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관련 유의사항

전화번호 변경 시 즉시 보호관찰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수신된 각종 정보는 본인 책임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휴대전화의 타인양도, 분실 등 본인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발신된 문자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안내받음.

대상자 : (서명 또는 인)

귀하의 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실이 공개된 범위	[]가족, []직장, []학교, []친구, []이웃, []친인척
우편물수령지	[]주민등록주소, []실제 거주지, []판결정문주소, []직장주소, []기타주소 (기타주소 :)

2. 죄명

사범	죄명
----	----

3. 직업(무직이면 전직과 우편물 수령지 기재 후 3번으로 가십시오) 전직(前職):

직업:	직장주소:
직장명:	☎전화번호:

4. 직업 상세사항

부서:	근무형태: []주간, []야간, []2교대, []3교대, []기타()	급여액:	근무시작일:
직위:		만원	년 월 일
근무시간대 :		급여형태 :	
: ~ : (시간/일)		[]연봉 []월급 []주급 []일급 []시급	

5. 가족 사항

혼인 관련	[]미혼, []기혼, []동거, []별거, []이혼, []사별, []기타()
-------	--

가족 중 생계책임자:

관계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비 고

6. 차량 관련 사항

차량(원동기 포함): []있음, []없음	차종: 색깔:	차량번호:	보험가입: []책임, []종합, []무보험
-----------------------------	------------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보호관찰(지)소장 귀하

○ ○ 보호관찰소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 법원장

발 신 ○ ○ 보호관찰소장 직인

제 목 보석조건 이행상황 통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6에 따라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상황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피 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지			
보석조건 사건관련	사건번호	0000초보000		
	결정기관	00 법원		
	결정일자	. . .		
	보석조건 내용			
보석조건 이행상황 요지				
보호관찰관 의견				
붙임 서류	보석허가 결정문 1부. 보석조건 이행상황 1부.			

○ ○ 보호관찰소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 법원장(○ ○ 검찰청 검사장)

발 신 ○ ○ 보호관찰소장 직인

제 목 보석조건 위반 통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7에 따라 피고인의 보석조건 위반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피 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지			
보석조건 사건관련	사건번호	0000초보000		
	결정기관	00 법원		
	결정일자	. . .		
	보석조건 내용			
보석조건 위반 사실의 요지				
붙임 서류	보석허가 결정문 등본 사본 1부. 보석조건 위반보고서 등 관련자료 1부.			

○○교도소(치료감호소)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검사장(○○보호관찰소장)

발 신 ○○ 교도소장(치료감호소장)

직인

제 목 : 출소자 등 통보서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1호, []제2조제3항제1호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출소예정자 []출소입박자 []출소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출 소 예 정 일 (출 소 일)		
죄 명		
첨 부 : 1. 수용기록부 2. 판결문 등본 3. 분류처우심사표 4. 그 밖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필요한 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m²]

출 석 요 구 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주 소 :

성 명 :

우편번호 :

귀하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률 제9112호 특정 성
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5호
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오니, 아래 일시·장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정한 일시에 출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조정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년 월 일 시

2. 장 소 : []○○검찰청 ○○○호 검사실, []○○보호관찰소 ○○○호실

3. 지참물: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인될 수 있습니다.

○○지방검찰청(○○보호관찰소장)

검 사 (인)

문의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 ○ 검 찰 청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법원장

발신 ○○ 검찰청

검사 (인)

제 목 : 구인영장 청구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를 위하여 아래 출소자를 []○○검찰청, []검거경찰서에 인치하고,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려고 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유효한 구인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출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사건 번호					
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기재와 같음				
여러 통의 구인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		별첨 소명자료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 ○ 보호관찰소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검사장

발신 ○ ○ 보호관찰소장 직인

제목 구인영장 신청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아래 출소자를 []○○보호관찰소, []검거경찰서에 인치하고,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려고 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유효한 구인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사건번호					
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기재와 같음				
여러 통의 구인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		별첨 소명자료 참조				

○ ○ 검찰청

수신 ○○법원장 년 월 일

제목 구인영장 청구

위와 같이 구인영장 신청을 받은 결과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구인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검사 (인)

210mm×297mm[백상지 80g/㎡]

구 인 영 장 신 청 부

○ ○ 보 호 관 찰 소

번 호		제 호		제 호		
사 건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구 인	신 청 일 시					
	발 부 일 시					
	기 각 일 시	검 사				
		판 사				
	구 인 일 시					
	구 인 장 소					
	석 방 일 시					
	집 행 의 퇴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구 인 영 장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법원

구인영장번호			
사 건 명			
출 소 자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지		
청구한 검사의 관직 및 성명			
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기재와 같음	유효기간	
인치할 장소	[]○○검찰청 []○○보호관찰소 []검거경찰서		
유치할 장소	○○경찰서 유치장		
①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 항제6호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따르지 아니할 우려가 있고, ② 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대상자를 구인한다.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구인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구인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년 월 일 판사 (인)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불능사유			
처리자의 소속 관 서 및 관직		처리자 서명날인	
인치일시		인치장소	
유치일시		유치장소	

210mm×297mm[백상지 80g/㎡]

○ ○ 보호관찰소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검사장 발 신 ○ ○ 보호관찰소장 직인

제 목 : 부착명령 집행장 신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아래 출소자를 []○ ○보호관찰소, []검거경찰서로 구인하려고 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유효한 부착명령 집행장의 발부를 신청합니다.

출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거지					
	사 건 번 호					
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기재와 같음				
여러 통의 집행장을 신청하는 취지 및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		별첨 소명자료 참조				

부 착 명 령 집 행 장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집행장번호				
출소자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등록기준지			
결정법원				
결정연월일				
부착명령기간				
준수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부착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위 출소자를 []○○보호관찰소 []검거경찰서로 구인한다. 이 집행장은 년 월 일까지 유효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다. 년 월 일 ○ ○ 검찰청 검 사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u>」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사의 요청) ① 「<u>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사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요청서에 따른다. ② 「<u>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u>」(이하 “영”이	<u>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 제1조(목적) ----- 「<u>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u>」 ----- ----- ----- -----. 제3조(조사의 요청) ① 「<u>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u>」----- ----- ----- ----- ----- ----- ----- ----- -----. ② 「<u>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라 한다) 제4조제1항 후단에 따
른 참고자료란 피의자 신문조
서, 피해자 진술조서, 범죄경력
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등을 말
한다.

제12조(가해제 신청서 등) 영 제1
6조제1항의 가해제 신청(영 제1
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18조제1항의 가해제 취
소 신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은 각각 별지 제
36호서식의 부칙명령 가해제(가
해제 취소) 신청서에 따른다.

제12조의2(가해제의 심사·결정
기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
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 심
사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
제4항·제5항(법 제21조의8, 제
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1
7조제1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해제
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피부착

제12조(임시해제 신청서 등) ----
----- 임시해제 -----

----- 임시해제 -

----- 임시해제
(임시해제 취소)-----.

제12조의2(임시해제의 심사·결
정기준) -----

----- 임시해제

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죄경력, 집행기간, 준수사항의 이행정도,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결정서) 법 제18조제4항·제5항(법 제21조의8,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17조(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해제 결정과 법 제19조제1항(법 제21조의8,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18조제2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해제 취소 결정은 각각 별지 제37호서식의 부속명령(보호관찰명령) 가해제 (가해제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제14조(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등) ① (생략)
② 영 제19조제2항의 결정서는

-----.

제13조(결정서) -----

----- 임시해제 -----

----- 임시해제 ----

----- 임시해제 (임시해제 취소) -----.

제14조(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9조의2제2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4조의2(조사의 의뢰) 법 제31
조의2제2항 및 영 제23조의2제1
항에 따른 조사의 의뢰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3(보석 피고인 신고서)
법 제31조의3제2항 및 영 제23
조의4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
44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4(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
지) 법 제31조의4제1항 및 영
제23조의6에 따른 보석조건 이
행 상황의 통지는 별지 제44호
의4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5(보석조건 위반 통지)
법 제31조의4제2항 및 영 제23
조의7에 따른 보석조건 위반 통
지는 별지 제44호의5서식에 따
른다.